

의안번호	제490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1월 1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0
----------	-----

제출연월일 : 2024년 1월 1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7. 24.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지방세기본법」 개정(2024. 1. 1.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6조)
-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 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항 제3호”를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 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시·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군수가 시·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관할 시장·군수가 시·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해”를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군수는”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장·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탈루세액”을 “별지 제4호서식의 탈루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이 신고된 경우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군수는”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시장·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별지 제5호 서식으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포상금지급대장”을 “포상금지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 신: 충청북도지사

참 조:

발 신: ○ ○ 시장·군수 (인)

○ ○ ○ (인)

(단위: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세	
합 계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 상				
숨은 세원 발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기 타				
제도개선 등					

- ※ 첨부: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부.
3. 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의결서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 략)</p> <p>3. <u>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u>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p> <p>4. (생 략)</p>	<p>제3조(지급제외)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방세징수법 시행령</u>」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 ----- -----</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제2조제1항 제2호</u>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 략)</p> <p>3. <u>제2조제1항 제3호</u>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p> <p>4. (생 략)</p>	<p>제4조(지급기준)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2조제1항제2호</u>-----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3. <u>제2조제1항제3호</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급한도) <u>제2조제1항 제1호</u>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p>	<p>제5조(지급한도) <u>제2조제1항제1호</u> -----</p>

현행	개정안
<p>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2. (생략)</p> <p>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회계감사 팀장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p> <p>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p> <p>2. 포상금 지급기준</p>	<p>-----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시·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p> <p>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u>3. 도세 등의 증대에 이바지한 공적</u></p> <p><u>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u></p> <p><u>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7조(지급신청) ① <u>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도세 등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군포상금지급심의회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u></p> <p><u>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u>③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포</u></p>	<p>제7조(지급신청) ① <u>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u>----- <u>별지 제1호서식의</u> -----</p> <p>-----</p> <p>-----.</p> <p>-----</p> <p>----- <u>관할 시장·군수가 시·군위원회</u>-----</p> <p>-----.</p> <p><u><삭 제></u></p> <p>③ ----- <u>해당하는</u></p>

현행	개정안
<p>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없이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자에 대해서----- -----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 --. <후단 삭제></p>
<p>제8조(탈루세액 등 신고 처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된 경우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p>	<p>제8조(탈루세액 등 신고 처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이 신고된 경우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한다.</p>
<p>② 탈루세액 등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장·군수가 ----- ----- -----.</p>
<p>③ 시장·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p>	<p>③ ----- -----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p>
<p>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p>	<p>④ ----- ----- 별</p>

현행	개정안
<p><u>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탈세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u></p> <p>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u>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처리결과를</u> 통지하여야 한다.</p>	<p><u>지 제4호서식의 탈루세액</u> ----- ----- ----- -----.</p> <p>⑤ ----- ----- ----- ----- <u>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u> ----- -----.</p>
<p>제9조(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p> <p>②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u>별지 제6호 서식</u>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u>시장·군수</u>는 신고 받은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p>	<p>제9조(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2호----- ----- ----- -----.</p> <p>② ----- <u>별지 제6호서식에</u> 따르고, 시장·군수가 -----.</p> <p>③ <u>시장·군수</u>----- ----- -----.</p>

현행	개정안
<p>월 이내에 <u>별지 제5호 서식</u>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u>별지 제7호 서식</u>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라 ----- ----- ----- <u>별지 제7호 서식</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지급)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p>	<p>제10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이 조</u>레 ----- ----- ----- ----- ----- -----.</p>
<p>제11조(환수)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p>	<p>제11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동안</u> ----- ----- <u>「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u>----- -----</p>

현행	개정안
<p>하여야 한다.</p> <p>제12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는 <u>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p>	<p>-----.</p> <p>제12조(대장비치) ----- --- <u>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u>-- <u>포상금 지급대장</u>----- -----. ----- -----.</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 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

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

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채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 가.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나.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4조(채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채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채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채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채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채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채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채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채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채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 12. 29.>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1. 1. 12., 2021. 12. 28.>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 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

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 12. 28.>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8항·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1항제9호·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4.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
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2조제1항제14호 ·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 제26호 · 제33호, 제34
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
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 · 제2항의 개정규
정: 2024년 1월 1일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시·군 공무원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3. 관련조문

-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가.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1
나.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3
다.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5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회계연도 기준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이월체납액 경과연수별 징수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도세 이월체납액 경과연수별 징수액			
	계	1년차 (’21년도 부과분)	2년차 (’20년도 부과분)	3년차 이상 (’19년도 이전 부과분)
계	2,497,387	1,923,804	255,098	318,485
취 득 세	2,401,429	1,865,494	240,445	295,490
등록면허세	95,958	58,310	14,653	22,995

나. 추계 결과 : 42,815천원

-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 $(1,923,804\text{천원} \times 1) \div 100 = 19,238\text{천원}$
-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 $(255,098\text{천원} \times 3) \div 100 = 7,653\text{천원}$
-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 $(318,485\text{천원} \times 5) \div 100 = 15,924\text{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42,815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이정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세입징수 포상금	42,815	42,815	42,815	42,815	42,815	214,07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42,815	42,815	42,815	42,815	42,81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